

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903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
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인

2016년 3월 9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제2호 “바”목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
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
을 때에는 의장이 정한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《신·구조문 대비표》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1.가~나(생략)</p> <p>2.가~마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신 설></p> <p>3.가~라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신 설>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가~나(현행과 같음)</p> <p>2.가~마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바.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3.가~라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정한다</p>